

## 지리적표시품의 표시(제60조 관련)

### 1. 지리적표시품의 표시



### 2. 제도법

#### 가. 도형표시

- 1) 표지도형의 가로 길이(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: W)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 $0.95 \times W$ 의 비율로 한다.
- 2)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(좌·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)의 간격은  $0.1 \times W$ 로 한다.
- 3)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 $0.55 \times W$ 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,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 $0.75 \times W$ 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.

나.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,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.


다. 표지도형의 색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


- 1)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경우: 기본색상은 녹색으로 하고,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.
- 2)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경우: 기본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고,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.

라. 표지도형 내부의 "지리적표시", "(PGI)" 및 "PGI"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, 하단의 "농림축산식품부"와 "MAFRA KOREA" 또는 "해양수산부"와 "MOF KOREA"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.

마. 배색 비율은 녹색 C80+Y100, 파란색 C100+M70, 빨간색 M100+Y100+K10으로 한다.

### 3. 표시사항

	등록 명칭: (영문등록 명칭)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,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(등록법인의 명칭): 주소(전화):
이 상품은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.	

	<p>등록 명칭: (영문등록 명칭)</p> <p>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,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</p> <p>생산자(등록법인의 명칭):</p> <p>주소(전화):</p>
<p>이 상품은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.</p>	

#### 4. 표시방법

- 가. 크기: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와 글자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.
- 나. 위치: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,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
- 다.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.
- 라. 포장하지 않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지와 등록 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.
- 마. 글자의 크기(포장재 15kg 기준)
  - 1) 등록 명칭(한글, 영문): 가로 2.0cm(57pt.) × 세로 2.5cm(71pt.)
  - 2) 등록번호, 생산자(등록법인의 명칭), 주소(전화): 가로 1cm(28pt.) × 세로 1.5cm(43pt.)
  - 3) 그 밖의 문자: 가로 0.8cm(23pt.) × 세로 1cm(28pt.)
- 바. 제3호의 표시사항 중 표준규격, 우수관리인증 등 다른 규정 또는 「양곡관리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